

**室內建築 業域의 業務環境 制度 改善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System of Interior Architecture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The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system and practice that have been applied to Interior Architecture, comparing with a number of similar foreign cases, in an attempt to seek the way toward its development as well as to come up with the solution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thereby making a recommendation on how to create the desirable work environ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own the road. Th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we have made is highlighted as follow. Among the practical or procedural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work environ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evelopment of current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in a way of further detailing the categories of Ki-sul-sa(highest engineer grade) or Ki-neung-jang(highest technician grade) as part of measures aimed at gradual approaching for improvement of design fees and rates or supervision fees will be very crucial, that calls for close coordination with the Ministry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n a bid to upgrade the Interior Architecture to become the part of knowledge-based industry, amendment to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long with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d Academic Classification will be essential, and moreover with the attitude of reflection and self-improvement, the endeavors to be able to deal with the revis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a consistent way and manner, by forming a joint committee among the three Interior Architecture-related organizations(KOSID, ICC, KIID), will be more than important.

키워드 : 실내건축 업역, 업무환경, 제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실내건축 분야는 건축분야와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건축관련 제도의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도와 관행이 여과없이 실내건축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실내건축업의 일반적인 업무영역과 진행과정은 수주-계획-설계-입찰-시공-준공 이다.

실내건축업은 건축업과 같은 상기 프로세스와 실내건축의 업역에 관한 정의 및 논리 부족으로 인해 법제도상 뿐만아니라 관행, 학문분야에서조차도 건축업과 명확하게 구분, 독립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실내건축업은 전문화와 특수성으로 인해 건축업과 많

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건축업 규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실내건축업에서의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논리적 근거에 의한 새로운 실내건축업역의 업무환경 제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실내건축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제도와 관행상의 사례를 비교, 고찰하여 국내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실내건축업역의 명확성을 나타내는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관련법 제도와 외국의 실내건축 관련법과 제도 및 규정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국내실내건축업계의 제도적 환경 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건축업역의 용어 및 정의를 밝힐 수 있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건축·실내건축학부 교수

** 본 논문은 2002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한 연구결과임

는 부분은 문헌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의 신뢰도를 위한 외국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자료화하였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와 관련된 법제도를 토대로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환경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내건축의 전문화된 업무영역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제한적인 요소 및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는 외국의 적용사례를 조사·비교검토·분석한다.

비교·분석 결과에 나타난 나라별 특징과 적용 가능한 사안과 적용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제안한다.

2. 실내건축 업역의 정의와 실내건축업의 개념

우리나라 실내건축의 업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법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의 업무내용은 전문건설업의 1. 실내건축공사업-「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 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¹⁾로 기술되고 건설공사의 예시에서는 「실내의장공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제외), 목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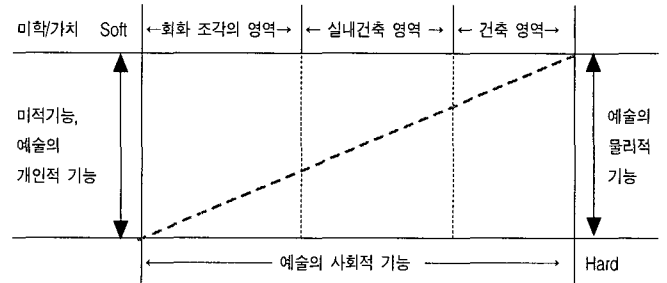
상기 내용은 2000년 4월 18일 종전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장공사업이 이 령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부칙이 변경되어 2001년 8월 25일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1년 8월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과거 전문건설업의 의장공사업으로 분류될 때 의장공사업이 목공사업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목공사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에 공작물, 장치공사 등을 포함시키게 되어 스스로의 업역을 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실내건축업은 실내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적 조건, 실내에서의 인간생활을 위한 기능적 조건, 정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공간을 계획하는 작업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건축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공간을 생활 목적에 따라 쓰기 쉽고 안락한 분위기의 공간이 되도록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실내에 질서와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는 행위²⁾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고려와는 무관한 공작물, 축

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실내건축의 영역을 나타낸 <그림 1>을³⁾ 살펴보면 실내건축 영역은 인접분야와의 협력과 관계를 통해서 예술적 통합환경 창출의 역할에 중심적인 영역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실내건축의 영역

다시 말해서 실내건축의 영역은 미술과 건축의 중심축을 이루고 양자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거대한 물적 구조체에는 예술적 기능을 통합시키고, 예술분야에는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미적 가치의 사회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실내건축업은 공간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제반의 가치 공학적, 기술적 노하우의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통합 예술환경을 위한 창조적 기여와 통합적 예술환경인 그 공간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업무환경의 국내·외 사례 분석

3.1. 국내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업무 환경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 실내건축 설계에 대한 법적 내용은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호 건축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실내건축가의 업역이 현재 건축사의 과외 보조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가와 실내건축가와와는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건축가들은 고객들의 요구조건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의 해결이 미숙한 것이 사실이다. 즉 실내공간의 용도가 변함에 따라 고객의 취향도 달라지면서 심미적이고 미적인 부분과 많은 업종들의 특성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건축가와 실내건축가와와의 업역이 전문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권내에서 실내건축업이 제대로 업역을 확보하고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내건축가의 라이선스 제도 도입과 업역에 필요한 [표준산업분류]의 체계부터 정비해야 하고 건축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2)오인욱,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2002. 8. p.12

3)김길홍,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446

사와의 업역에 대한 정확한 업무구분과 실내건축공사의 허가업무와 관련된 감리제도의 시행 여부, 설계 보수율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국내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업무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내건축가 라이선스 제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실내건축분야의 라이선스는 1991년 의장기사 1급이 제정되어 1999년 3월 실내건축기사로 개정되었다. 실내건축기사의 수행직무는 「건축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분석자료 및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공간의 기능에 맞게 면적을 배분하여 공간을 계획 및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개념도, 평면도, 천장도, 입면도, 상세도, 투시도 및 재료마감표를 작성 설계가 완료된 도면을 제작하고 현장의 시공을 관리하는 직무수행」⁴⁾으로 되어 있다.

실내건축산업기사는 의장기사 2급이 개정된 자격이며, 실내건축기능사는 1997년 제정되었다. 실내건축기능사의 수행직무는 「건축물 내부의 장식, 방음, 실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자재를 이용하여 방음, 설비, 마루, 칸막이, 천장, 목(木)장식품 등을 제작 설치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실내건축기사와 실내건축산업기사의 직무수행을 분석해 보면 공간계획 및 구성을 하여 설계도면 제작 및 현장의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계, 감리, 현장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이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공분야에서는 2001년 8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상 기술능력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 자격을 무리하게 완화하여 건설업 면허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그 등록기준도 하향 조정하는 반면 건설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소홀해져 부실업체들이 양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내건축업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 구분이 없어 시공을 전담하는 업체가 계획과 설계, 감리 분야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되어 시공상의 편의 위주의 설계변경이 시행되어 당초의 설계 의도를 왜곡시키고 부실시공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내건축의 업무영역과 프로세스 상의 문제는 계획, 시공, 감리 등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전문성 확보와 소비자의 인식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가들은 설계부문에서 라이선스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실내건축 설계분야의 라이선스 도입은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지난 십 여 년 동안 실내건축 설계 라이

선스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설계 보수율 및 시공단가의 표준화

설계 보수율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 인식은 라이선스 제도와 맞물려서 정부부처의 설계보수율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계보수율의 인정은 실내건축가 라이선스 제도 확립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 제정한 실내건축표준시방서와 실내건축 관련 일위대가작업 등이 건축관련 업무와 별도로 구별되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준비하였으나 정부 부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정부 표준산업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 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 목적 이외에도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⁵⁾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업역에 관한 표준산업분류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업은 명확한 산업분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행 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보면 대분류 F.건설업의 중분류 46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세분류 464 건축마무리공사업 4641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 세세분류에서 46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대분류 M 사업서비스업의 중분류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746 전문디자인업의 세세분류 74601 인테리어 디자인업⁶⁾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실내건축의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업은 74601의 인테리어 디자인업이고 시공하는 업체는 46412의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⁷⁾으로 되어 있다.

(4) 실내건축분야의 직업분류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제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를 근거로 1963년 한국표준

5)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목적

6)건축법규, 안정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정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건물,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된다) 제외 사항은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 서비스를 제공, 실내장식공사(46412),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75994)」

7)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 카펫 공사, 실내장식공사, 내장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별 자격검정 시험의 실내건축기사 직무 수행.

직업분류가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된 후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로 확정고시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직업분류에 실내건축(인테리어디자인)관련 분류명칭 및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대분류 1.전문가 중에서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의 중분류의 직업은 4개 소분류로 구성되어있는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세세분류에 1832 디자이너⁸⁾, 18323 인테리어 디자이너⁹⁾로 명시되어 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분류 명기도 2000년의 개정 작업때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를 통해 ‘실내장식가’ 라는 명칭을 실내디자이너로 명칭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안이다.

다음은 대분류 1 전문가 중에서 13 공학 전문가의 중분류의 직업은 131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의 세세분류에 1311 건축전문가에 예시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18323)는 제외되고 13111 건물 건축가¹⁰⁾ 예시에 건물건축가, 실내건축가로 표기되어 있다. 이 내용은 정부관청에서 직업분류에 실내건축가로 표기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실내건축분야의 학문 분류

한국학술진흥재단¹¹⁾의 학문분야별 코드에 실내건축관련 코드를 보면 예술·체육의 대분류에 [디자인] 중분류 속에 G040100 디자인 일반, G040200 환경디자인, G040300 시각정보 디자인, G040400 산업디자인, G040500 섬유디자인, G049900 기타디자인에서 세세분류에서 환경디자인 속에 G040201 생활실내디자인, G040202 실내환경디자인, G040203 옥외환경디자인으로 분류되어 실내건축의 분류인 실내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 모두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분류되고 있다.

3.2. 국외 실내건축업의 제도적인 업무환경 사례분석

국내실내건축업계의 제도적 현황 내용으로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국외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환경을 조사¹²⁾하여, 분

8)디자이너는 생활용품, 가구, 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 신발 등의 패션 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디자이너의 주요업무>

- 생활용품, 가구 및 완구 산업, 조명기기 등을 디자인한다.
- 새로운 형태와 모양의 의복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제품을 디자인한다.
- 실내장식을 디자인하고 진열에 대한 예술적 효과를 높인다.
-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및 캐릭터 등을 디자인한다.

9)주택, 상가, 사무용 건물 등의 내부장식을 계획하여 디자인하는 자로 내부시설에 대한 이용계획, 가구나 시설의 배치, 색상의 배치 및 조성 등 내부 설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 분석하여 적절한 도안을 작성한다. <통계청 직업내용 설명>

10)각종 건물에 관한 연구와 건물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학술진흥법 제13조 제 14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1년 학술의 연구 및 국내·외 교류와 협력 등 학술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더불어 학술연구기반 조성 및 신진연구인력을 양성하여 학문전반의 연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진흥기관이다.

12)중국, 일본은 AIDIA(Asia Interior Design Institute Association)를 통해 4가지 분류별로 조사한 사항이다.

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내건축 관련 라이선스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각국의 면허제도가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못하고 건축분야의 영향을 받으면서 체계화되지 못한 제도적인 한계를 볼 수 있다.

<표 1> 외국자격제도와와의 비교

국가 구분	한 국	일 본	중 국	미 국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 제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축실내장식시공자격 1급, 2급, 3급으로 분류 -건축장식설계자격 갑급, 을급, 병급으로 분류	-General Contractor
실내건축가 라이선스		-인테리어 플래너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상업시설자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	-공인인테리어 디자이너 (Certified interior designer)
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1973년 제정)	직업훈련법 (1985년 제정)	건설부 건설공정 실시 조사와 설계회사 자격 관리 기준	주정부의 건설국, 문교당국 주평의회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제도

현재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면허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각기 다른 명칭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시공과 실내건축공사업의 설계로 나누어 비교적 자세한 자격 표준분류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실내건축공사의 시공은 「건축실내장식 시공 자격등급 분류표준」 <표 2>와 같이 자격표준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공사의 실적, 기업책임자의 업무 경력과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회계사의 경력과 관련학과 출신 여부 및 회사 구성원의 인원을 규정해 놓고 자본금과 3년간의 시공결산 수입에 따라 자격표준을 정하고 있다. 공사의 가능범위는 1급 기업은 각종 건축의 실내·외 장식 시공이 가능하고, 2급 기업은 총공사비 1200만원(元-위엔) 이하의 건축실내·외 장식시공이 가능하며, 3급 기업은 600만원(元-위엔) 이하의 각종 건축의 실내·외 장식시공이 가능하다.¹³⁾

또한 중국은 중국 건설부의 <건설공정 실시조사와 설계회사 자격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장식설계의 실제적인 기술적 요구와 결합시켜 “건축장식설계 자격 등급 분류표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축장식 설계자격분류의 기준은 건축장식 설계회사의 설계 등급 등에 의하고 건축장식설계 자격은 갑,

13)中華人民共和國 建設部管理司, 建築業企業 資質管理文件彙編, 北京, 2001.4, pp.72-73

<표 2> 중국 건축실내장식시공 자격등급 분류표준¹⁴⁾

자격 표준	공사실적	업무경력 및 자격기준	등록자본금	시공결산 수입
1급 자격 표준	근 5년간 총공사비 한건당 1000만원(元-위엔) 이상이거나 3등급이상 호텔 로비 등 3가지 이상의 실내장식시공 실적 및 시공에 하자없는 기업	-기업책임자는 8년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고급자격을 갖춘 자 -총공정자는 8년 이상의 건축실내장식시공기술관리 업무경력이 있고 고급자격을 갖춘 자 -총회계사는 중급이상의 회계자격을 갖춘 자 -자격을 갖춘 시공기술자와 경제관리 인원이 최소 40명 이상, 그중 시공기술 인원이 최소 30명 이상 -건축학, 환경예술, 골조, 난방, 배수, 전기분야의 전문인원이 갖추어야 하며 시공기술 인원중에서는 중급이상이 10명 이상 -1급 시공책임자는 최소 5명 이상	1000만원(元-위엔)이상 기업순자산(순이익) 1200만원(元-위엔)이상	기업의 근 3년간 최고 시공 결산수입 3000만원(元-위엔) 이상
2급 자격 표준	근 5년간 총공사비 한건당 500만원(元-위엔) 이상의 공사를 2가지 이상, 혹은 총공사비가 한건당 50만원(元-위엔)이상의 실내장식시공공사를 10가지 이상 공사를 하고 그 시공에 하자가 없는 기업	-기업책임자는 5년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중급자격을 갖춘 자 -기술관련 책임자는 5년 이상의 경력과 중급자격을 갖춘 자 -회계책임자는 중급이상의 회계자격을 갖춘 자 -자격을 갖춘 시공기술자와 경제관리 인원 25명 이상, 그중 시공기술인원이 최소 25명 이상 -건축학, 환경예술, 골조, 난방, 배수, 전기분야의 전문인원이 갖추어야 하며 시공기술 인원중에서는 중급이상이 5명 이상 -2급 시공책임자는 최소 5명 이상	500만원(元-위엔)이상 기업순자산(순이익) 600만원(元-위엔)이상	기업의 근 3년간 최고 시공 결산수입 1000만원(元-위엔) 이상
3급 자격 표준	근 3년간 총공사비가 한건당 20만원(元-위엔) 이상의 공사를 3가지 이상의 실내장식시공공사를 하고, 그 시공에 하자가 없는 기업	-기업책임자는 3년 이상의 시공관리업무 경력자 -기술관련 책임자는 5년 이상의 건축실내장식 시공기술 관리업무 경력과 중급자격을 갖춘 자 -회계책임자는 초급이상의 회계자격을 갖춘 자 -자격을 갖춘 인원 최소 15명 이상, 그중 시공기술인원이 최소 10명 이상 -건축학, 환경예술, 골조, 난방, 배수, 전기분야의 전문인원이 갖추어야 하며 시공기술 인원중에서는 중급이상이 2명 이상 -3급 시공책임자는 최소 2명 이상	50만원(元-위엔) 이상 기업순자산(순이익) 60만원(元-위엔) 이상	기업의 근3년간 최고 시공 결산수입 100만원(元-위엔) 이상

을, 병 3급으로 나뉜다. 각 등급별 표준은 <표 3>과 같다. 또한 등급별 공사가능범위를 보면 갑급 건축장식 설계회사는 무제한이고, 을급 건축장식 설계회사는 2급 민간건축공정설계와 2급 이하의 공사가 가능하다. 병급 건축장식 설계회사는 3급 민간건축공정설계와 3급 이하의 공사가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실내건축업 시공회사와 설계회사에 대한 자격등급의 표준이 분리되어 있지만 설계회사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14) 中華人民共和國 建設部管理司, 建築業企業 資質管理文件彙編, 北京, 2001.4, pp.72-73
15) 中華人民共和國 建設部, 工程勘察設計 資質分級標準彙編, 北京, 2001.10, pp.167-169

<표 3> 중국 건축장식설계 자격등급 분류표준¹⁵⁾

내용 등급 분류	건축장식 설계업종 실적	등록 자금	전문인원	기타
갑급 표준	건축장식설계업종에 6년이상된 회사로 최소 5가지 이상 총공사가격이 1000만원(元-위엔)이상인 고급 장식 공사 ¹⁶⁾ 를 한 회사(단, 질적 하자가 없어야 함.)	100만원(元-위엔)이상	전문인원 ¹⁷⁾ 최소 15명 전문인원중 건축장식설계(건축학 설계, 환경예술, 공예미술, 예술설계 전공)에 종사인원은 최소 8명, 골조, 전기, 배수, 냉난방 등에 종사하는 인원은 최소 1명	-국가와 그 지역의 건축장식설계표준 규범제정, 표준설계도집의 편집 또는 그 방면의 작업에 참가한 회사 -완벽한 체계, 기술, 경영, 인사, 재무 등의 관리제도가 갖춰진 회사 -사무실건축면적 최소전문인원 1인당 15평 보유
을급 표준	건축장식설계업종에 4년이상된 회사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총공사가격이 500만원(元-위엔) 이상인 공사를 한 회사(단, 질적 하자가 없어야 함.)	50만원(元-위엔)이상	전문인원: 최소 10명 전문인원중 건축장식설계에 종사인원은 최소 5명, 골조, 전기, 배수, 냉난방 등에 종사하는 인원은 최소 1명	-관리제도 상동 -사무실 건축면적 상동
병급 표준	건축장식설계업종에 2년이상된 회사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총공사가격이 250만원(元-위엔) 이상인 공사를 한 회사(단, 질적 하자가 없어야 함.)	20만원(元-위엔)이상	전문인원: 최소 6명 전문인원중 건축장식설계에 종사인원은 최소 3명, 골조, 전기, 배수, 냉난방 등에 종사하는 인원은 최소 1명	-관리제도 상동 -사무실 건축면적 상동 -컴퓨터는 전문인력 한 대씩 보유, 컴퓨터 시공도면 출력도가 75%이상

미국의 경우 시공업체는 'General Contractor'라고 불려지는 면허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달리 각 업체별로의 전문성에 의해서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업체의 실적에 의해서 CREDIT을 평가하는 것은 한국과 비슷하다. 또한 일본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고 관청(도,시,구)의 공사에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1, 2급 시공감리기사, 1, 2급 건축사)이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2) 실내건축가 라이선스 제도

외국의 실내건축가 라이선스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비교적 라이선스 제도 확립의 발판을 굳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테리어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1991년 6월부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가와의 업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다. 뉴욕주의 법률안을 토대로 검토하여 보면 미국에서는 인테리어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를 '공인 인테리어 디자이너(Certified interior Designer)'라고 칭하며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는 '공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16)고급건축장식공정은 공사가격이 한평당 3000원(元-위엔)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17)전문인원은 국가등록 건축사, 고급 또는 중급 직함을 얻은 전문인원, 대학본과 졸업 후 3년 이상 이 방면에 종사해 온 사람, 중등전문학교 졸업 후 7년 이상 종사를 해 온 사람으로 규정

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인을 갖거나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공인 인테리어디자이너나 그 감독하에 직원이 작성하는 제반 인테리어의 시공도면, 계획도서 및 시방서에는 이 직인을 각인하고,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본인의 서명을 추가해야 한다.¹⁸⁾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강력히 적용되고 있다.

일본에는 면허자격제도는 있지만 무자격으로도 디자인 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다. 3종류의 자격제도가 있는데 “인테리어 플래너(interior planner)제도”는 [인테리어 설계 등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의 심사, 증명사업 인정 규정-1987년 1월 6일 건설성 고시 제14호]에 기초하여 건설대신이 인정하는 자격으로서 (재)건축기술교육보급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의 인테리어 설계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이나 기능에 관하여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에게 등록 수속을 거쳐 인테리어 플래너의 자격이 부여된다.

“상업시설자 라이선스 제도”는 사단법인 상업시설 기술단체 연합회가 실시하며 일본통상산업대신(상공부장관) 및 건설대신(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업무내용은 상업시설의 기획, 개발, 디스플레이업, 점포장식업, 점포디자인 등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이너만이 아니고 상당수 시공관계의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다.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라이선스 제도”는 사)인테리어산업협회가 실시하고 통상산업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로 인테리어 관련 업종의 소매점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선택 및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코디네이트에 있어서의 적절한 제안을 주업무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상과 같이 3가지 라이선스 제도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 아직까지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는 못하고 건축적인 분야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실내건축 관련단체인 중국건축장식협회와 중국건축학회, 중국실내설계학회 등에서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작품 및 경력 심사와 영어, 컴퓨터 시험은 필수로 년 1회 실시하며, 자격증은 초급, 중급, 고급 3가지로 나누어 발급하고 있으며 초급의 대상은 본과 졸업생, 실무경력 3년 이상, 중급은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은 실무경력 8년 이상인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4.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업무환경 개선 방안

우리나라 실내건축업계는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제도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

18)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인테리어디자이너 라이선스 제도에 관한 연구, 1995, pp.24-30

지 조사,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실내건축공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접근

우리나라에서 실내건축업이 태동된 시점은 대략 1950년대 후반으로 보며 그때의 실내건축업체들은 회사라기보다 아트리에형의 개인사무실 위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설계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관행이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법적 규정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¹⁹⁾ 1979년에 창립된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가 1983년 9월에 인테리어 설계보수요율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1997년 5월에 재개정하여 「실내건축가업무 및 보수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인식부족과 관청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채 실내건축 설계비의 정당성 시비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라이선스를 구축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현 법적제도에서 시행되는 범위에서 단계별로 제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① 1단계 접근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개정요구

건설교통부 건축사법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업무의 범위²⁰⁾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리모델링 설계업무, 인테리어 설계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설계업무 대가²¹⁾는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1.5배를 설계비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건축사자격소지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실내건축업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서 조항인 리모델링 설계업무와 인테리어 설계업무를 제5조 업무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된 실내건축업의 업무범위를 위해 건축사협회와 실내건축계가 상호 협의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② 2단계 접근 -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활용

우리나라 실내건축의 자격등급은 현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를 갖추고 있으나 기술사와 기능장 자격등급은 <표 4>와 같이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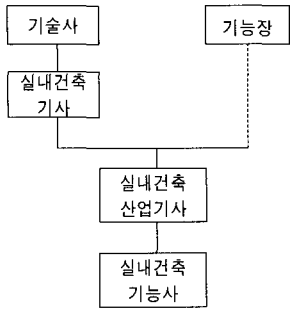
따라서 기술사와 기능장 자격등급을 신설하여 실내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등급을 법에서 정한 전문고급인력을 갖춘 다음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1-116호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현재 설계비 및 보수요율, 감리비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실내건축기사 및 산업기사의 설계,

19)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NEWS LETTER 1999.04, p.16

20)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호 건축사법 제19조 3항(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21)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호 건축사법 제19조 3항(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제9조(건설계약대가산정)

<표 4> 국가기술자격체계(실내건축분야)



<표 5> 엔지니어링 사업별 기술자 등급별 실지급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건설 및 기타
기술사	183,237
특급기술자	140,793
고급기술자	120,231
중급기술자	100,560
초급기술자	71,973
고급기능사	90,072
중급기능사	71,771
초급기능사	57,485

시공, 관리의 수행직무를 법적 근거로 활용하여 설계비 및 보수요율 <별표 1>에 의한 건설부문의 요율을 이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또한 기술사의 기술자 등급별 실지급 임급의 <표 5>를 이용하여 실비 정액가산 방식의 산출에도 정당한 설계비와 감리비를 계정할 수 있게 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단위 : %)

요율	건설부문의 요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1,000만원까지		3.87	7.75	4.30	15.92
2,000만원까지		3.29	6.57	3.65	13.51
3,000만원까지		3.03	6.06	3.36	12.45
5,000만원까지		2.73	5.46	3.03	11.21
1억원까지		2.56	5.11	2.85	10.52
2억원까지		2.04	4.08	2.26	8.38
3억원까지		1.87	3.73	2.06	7.66
5억원까지		1.69	3.39	1.89	6.97
10억원까지		1.49	2.99	1.66	6.14
20억원까지		1.37	2.75	1.53	5.65
30억원까지		1.32	2.65	1.48	5.45
50억원까지		1.30	2.60	1.45	5.35
100억원까지		1.27	2.53	1.41	5.21
200억원까지		1.23	2.45	1.37	5.05
300억원까지		1.22	2.44	1.35	5.01
500억원까지		1.19	2.39	1.33	4.91
1,000억원까지		1.18	2.35	1.30	4.83
2,000억원까지		1.16	2.32	1.28	4.76
3,000억원까지		1.15	2.29	1.25	4.69
5,000억원까지		1.13	2.27	1.23	4.63

따라서 제도운영총괄부처인 노동부의 자격진흥과와 검정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기술자격등급의 기술사등급에 실내건축기술사의 필요성과 기술분야 및 기술분야별종목 개편안을 제출하여 기술사 제도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③ 3단계 접근 - 실내건축가 라이선스 제도 도입

실내건축가 라이선스 제도는 실내건축의 설계 및 감리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수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정을 거쳐 유자격자로 공인되어야 실내건축가들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고 책임있는 우수한 기술, 능력을 계속 확보할 것이며 사회의 공간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내건축분야는 점점 영역이 확대되어 세분화, 전문화

의 요구를 받고 있어 설계와 시공, 감리들의 업무 분리와 전문화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가 필연적이지만 정부는 규제완화시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라이선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실내건축업계도 설계와 시공의 자격등급분류에 의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건설부는 [工程勘察設計 資質分級標準]과 같이 실내건축 설계 자격등급 분류표준을 제정하고 설계자의 자질은 협회와 학회에 위탁하여 설계자 자격 검정을 거쳐 라이선스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부의 협조를 얻어 민간자격공인제도를 도입하되 국가자격검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실내건축 관련학과가 4년제 47개교, 전문대 68개교, 대학원 15개교의 22학과에서 매년 8,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공학생들에게는 라이선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자격제도에 관한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명확한 명분과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을 통하여 사회일반에 설득력있는 현실적 문제를 여론화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내건축 업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정부가 완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 면허제도가 등록제도로 전환되고 그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사무실 보유기준이 없어지는 등 규제되어야 할 필수적인 자격요건마저 철폐됨에 따라 무자격, 부적격 업체들이 대폭 건설업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²²⁾ 따라서 우리 실내건축업계가 형식상으로 제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내건축업이 전문영역으로서 독창성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이 제도화는 실내건축업체의 조직을 전문건설협회 산하 기구로 한정해 놓은 것부터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설비공사는 전문건설협회 산하기구에서 벗어나 일반건설업으로 분리되어 「산업설비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적 활동을 하고 있다. 실내건축업이 타분야 전문업종과는 업역이나 내용면에서 차별화가 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건설업 주위 환경 여건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독립된 일반건설업으로 분리되는 것을 위해서는 단계적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내부의 체질 개선과 업역 확대에 따른 업무내용의 재설정이다.

첫째, 실내건축의 내부체질 개선으로 정보화와 과학화를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활동과 신기술개발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한 DB 구축, Web site 운용을 실내건축 관련 단체들이

22)김이현, 부적격업체 퇴출이 급선부, 전문건설신문 제675호, 2003.01.13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인프라 구축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생기게 된다.

둘째, 실내건축업이 일반건설업으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실내건축업의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현행법상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건축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명시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이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 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 공사와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로 개정하여 업역을 확대하여 일반인에게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내부 용도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 등은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리모델링 작업들은 실내건축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인간생활의 복합적인 기능과 창의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예술 창출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²³⁾에 있는 특급기술자(기술사, 기사경력10년, 산업기사경력 13년), 고급기술자(기사7년, 산업기사 10년), 중급기술자(기사4년, 산업기사7년),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 등의 기술등급을 고루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실내건축업의 기술사 자격 제정이 필요하다.

실내건축업이 건설업의 주변환경과 여건 때문에 일반 건설업으로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외국사례에서 현재 중국이 건설부의 <건설공정실지조사와 설계회사 자격 관리 규정>에 의해 실내건축 시공자격 등급 분류표준을 제정하여 설계자격 등급 분류 표준과 함께 시행하면서 전문인원에 대한 자격은 학회나 협회가 부여하듯이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실내디자인학회가 검정을 거쳐 라이선스를 주면 민간자격공인제도로 업계의 질서도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2)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실내건축업을 위한 제도 개선

실내건축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개선하려면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에서 명확한 실내건축업의 통일된 분류체계와 학술적 이론 연구를 위한 학문 분류체계를 정비해야만 가능해 진다.

①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도배, 목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실내건축공사업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인정한 것에 반한 내용으로 464 코드의 건축마무리공사업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세세분류의 4641 코드에는 실내건축 개보수공사업 46411 코드와 46412를 통합하여 수장공사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설계(디

자인)분야는 사업서비스업에 전문디자인업 중에 인테리어 디자인업이 분류되어 있다.

<표 6>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F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공사업)	464 건축마무리 공사업	4641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	46411 도장공사업 46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M 사업서비스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6 전문디자인업	7460 전문디자인업	74601 인테리어디자인업 74602 제품디자인업 74603 시각디자인업 74607 기타전문디자인업

② 통계청의 표준분류의 직업분류에 명시된 실내건축관련 직업분류는 <표 7>과 같다. 코드번호 1311의 건물건축가는 건축가로 명시되어야 하고 1312의 코드를 추가하여 실내건축가로 명시해야만 분류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표 7> 직업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전문가	13. 공학전문가	131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1311 건물 건축가 예시) 건물건축가, 실내건축가
	18.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전문가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1832 디자이너 18321 제품디자이너 18322 패션디자이너 18323 인테리어디자이너 18324 시각디자이너 18329 기타 디자이너

이상과 같이 관련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의 일반행정과 산업정책 관련법령,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내건축업이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실내건축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산업 분류」와 「직업분류」가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분류한 학문분류 중의 실내디자인 관련분야를 보면 <표 8>에서 대분류에 예술·체육, 중분류에 디자인, 세분류에 환경디자인, 세세분류에 생활/실내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 옥외환경디자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분류표를 보면 아직 예·체능이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위상을 볼 때 대분류에 디자인, 중분류 환경디자인, 세분류에 실내디자인, 세세분류를 통합하여 요소디자인의 명칭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

<표 8> 학술진흥재단 학문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예술, 체육	디자인	G040100 디자인 일반 G040200 환경디자인	G040201 생활/실내디자인 G040202 실내환경디자인 G040203 옥외환경디자인
		G040300 시각정보디자인 G040400 산업디자인 G040500 섬유디자인 G049900 기타디자인	

(3) 실내건축업의 전문화를 위한 관련된 제도 개선

① 경영적 측면

가. 공정의 세분화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실내건축업계는 수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하자보수 등 일련의 과정을 한 업체에서 모두 수행하는 체제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실내건축업의 프로세스상의 문제를 보다 전문화시켜야만 행정적 뒷받침과 독창적인 전문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궁극적으로는 평가되어 실내건축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다

나. 업종의 세분화는 주력업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경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주거공간, 사무공간, 금융공간, 상업공간, 전시공간 등의 각 공간별로 특성에 맞는 업종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인들의 의식개혁과 일반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다. 업체별 컨소시엄 구성(M&A 등을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을 통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대형업체들과 상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각각 전문화된 업체들 사이의 컨소시엄형성이 필요하다.

②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경제적 설계 및 실용성을 강조한 공법과 공간설계 기법의 개발에서 Remodeling과 Renovation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실내건축업계의 Data Base 구축은 전무하므로 Data Base 구축 통한 전문업체 및 종사자들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실내건축업계의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자재 국산화 및 자재 재활용에 대한 노력은 실내건축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실내건축업계가 기존의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실내건축가의 고유의 정서와 과학적 기술의 뒷받침으로 신소재를 개발하여 디자인사업을 이끌어간다면 실내건축업계의 발전 뿐만아니라 내수 및 수출로 인해 국가 경제에도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Marketing적인 측면

일반대중들의 실내건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실내건축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이윤추구보다 서비스 측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컴퓨터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인테리어 생활 홍보와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전달해 나가면서 일반대중들을 리드해 나가는 디자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사업의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한 지속적인 마케팅 연구 개

발과 실내건축업에서의 차별화된 시장 개척 및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실내건축업계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내건축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와 관행을 외국사례와 함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실내건축업역의 업무환경 제도 구축에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내건축업의 제도적 업무환경에 나타나는 관행상, 규정상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중의 하나인 실내건축 설계비 및 보수요율, 감리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단계적 접근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활용에서 기술사, 기능장 자격 등의 기술자격 등급 제정은 중대한 사안으로 노동부 및 산업인력관리공단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실내건축 기술사 자격등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내건축 분야는 공간예술 문화를 주도하는 부분중 산업사회가 발달되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지되고 있는 분야로서 예술과 공학이 결합되어야 하는 독특한 분야이다. 따라서 국가자격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직종인 만큼 실내건축분야가 법적 장치없이 제도권에 있지 못하면 비전문가들의 난립으로 수준낮은 비윤리적인 공간을 양산하게 되고 생활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격공인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자격점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ICC)는 전문건설협회의 자문기구에서 분리·독립하여 법적,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실내건축업계의 정당한 권익 보호나, 정책적 대안을 정부나 사회에 전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내건축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 「학문분류」 등을 재정비해야 하고 실내건축업계의 자성과 체질 개선, 그리고 제반 관련제도의 개정을 실내건축 3단체(KOSID, ICC, KIID)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내건축업계의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1. 오인옥,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2002
2. 오인옥, 실내계획론, 기문당, 1993
3. 김길홍,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4.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인테리어디자이너 라이센스 제도에 관한 연구, 1995
5. 中華人民共和國 建設部管理司, 建築業企業 資質管理文件彙編, 北京, 2001
6. 中華人民共和國 建設部, 工程勘察設計 資質分級標準彙編, 北京, 2001
7.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의회, Interior Architecture vol. 3, 1999
8.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의회, Interior Architecture vol. 2
9. 장동찬, 건축제법규, 기문당, 2002
10. <http://www.krf.or.kr>
11. <http://www.nso.go.kr>
12. <http://www.g-net.or.kr>

<접수 : 2003. 2. 25>